

##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- 호

『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(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-호)』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11월 25일  
중 소 기 업 청 장

### 전통시장및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개정(안) 행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- 그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 중 지자체·상인·지방청 등에서 제기한 문제점 개선

#### 2. 관련근거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 20조

#### 3. 주요내용

- ① 임대료 동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선정 우대
  - 가점 :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5점
  - 감점 : 임대료 증감을 평균 9% 이상(-5), 7~9%(-4), 5~7%(-3), 3~5%(-2), 1~3%(-1), \* 2016년부터 적용
- ② 공동판매장 민간자부담 면제대상 추가 : 공동판매장을 지자체 소유로 하여 지자체 주도적으로 운영토록 함
- ③ 사업변경 승인기간 설정 : 14일 이내
- ④ 사업변경 횟수 제한 : 2회로 제한

- ⑤ 지원대상 및 우선지원 사업에 무등록시장 안전시설 포함
- ⑥ 고객지원센터 등에 대한 관리 및 운영계획 제출 의무화 : 사업신청시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·제출토록 함
- ⑦ 고객지원센터 등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물 관리 강화 : 고객센터, 공동판매장, 공동물류창고, 태양광발전 등 수익 발생시설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관리감독 강화
- ⑧ 미집행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은 지자체 지원대상 제외 : 균특법(제43조)에 따라 2010년도 사업부터 미집행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함에 따라 규정 신설
- ⑨ 시설물 설치시 디자인 반영 : 시설물 설치시 지역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반영토록 하고 반영시 가점 부여(3점)
- ⑩ 시설현대화 추진경과 작성 의무화 : 시설현대화사업이 장기 사업임에 따라 사업 이력 작성 의무화
- ⑪ 전선지중화사업 한국전력과의 협의 의무화 : 익년도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해 한전과 사전 협의토록 함
- ⑫ 집행잔액 활용 추가사업시 지원비율, 실적보고 절차 명확화 : 집행잔액 활용 사업에 대하여도 관리 강화
- ⑬ 건물 임차(고객센터 등)에 대한 계약기간 등 지침 마련 : 5년 이상 계약기간 설정
- ⑭ 사업변경, 집행잔액 활용 사업추진시 지방청을 컨설팅기관으로 포함
- ⑮ 집행잔액 활용 추가사업 승인절차 명확화 : 50백만원 이하의 시·군·구, 50백만원~1억은 시·도가 승인
- ⑯ 실태조사 평가점수 조정 : 시설물 유지관리계획, 원산지 및 가격표시, 고객선지키기 등 중요사항 신규 추가 등

4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공고일로부터 20일

5. 공고방법 : 중소기업청 홈페이지(<http://www.smba.go.kr>)에 공고

6. 의견제출 : 『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개정(안)』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제출처 :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

○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, 전자우편

\* 방문, 우편 : 대전 서구 선사로 139(둔산동 920) 정부대전청사  
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과(☎ 042-481-4516)

\* e-mail : [corea21@smba.go.kr](mailto:corea21@smba.go.kr)

4. 기타사항 :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개정(안)을 마련하는 과정(공청회, 간담회 등)에서 제출·검토된 의견과 동일한 사안은 의견수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